##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31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4.

발 의 자:이 용・김성원・서정숙

신원식 · 김형동 · 배현진

주호영 • 배준영 • 김승수

장제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함)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.

그런데 「독서문화진흥법」,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등의 문화관 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 중 "수립"을 "5년마다 수립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        | 제3조(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|
|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        | 수립 등) ①          |
| 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(이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<u>수</u> | <u>5</u>         |
| <u>립</u> ·시행하여야 한다.      | <u>년마다 수립</u>  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|